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06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김민전 · 서천호 · 윤한홍
조배숙 · 최수진 · 정동만
장동혁 · 박수영 · 김선교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매우 높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임.

이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제5호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의 경우에는 벌금액
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그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단서 신설>	5. ----- ----- ----- ----- ----- ----- ----- <u>「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에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u>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⑤ ~ ⑮ (생략)	⑤ ~ ⑮ (현행과 같음)